

경운대학교 비정년계열전임교원보수에관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교직원보수규정」 제5조 제1항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운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보수의 결정) 이 규정에 의한 보수의 결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초연봉 및 성과연봉과 각종 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초연봉이라 함은 당해학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간 지급 되는 금액이며 급량비와 연구보조비를 포함한다.
3. 성과연봉이라 함은 교육 및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기여를 반영한 금액이며,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4.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 처우개선분을 포함한다.

제2장 연봉 및 수당

제5조(연봉) 교원의 연봉은 기초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기준연봉으로 하고, 직무수행 수준 등을 반영하여 책정한다.

제6조(기초연봉) 기본급에 해당되며, 동일 직급 정년계열 전임교원 연봉을 기준으로 교원의 직무수행평가 반영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7조(성과연봉)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제8조(처우개선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여 교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9조(보직수당) ① 보직에 임명된 교원에 대하여 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상위직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교원의 직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복리후생비)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2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보수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운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